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08

# 서 울 고 등 법 원

## 제 1 - 2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23누457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|
| 원고, 피항소인 | ○○○○발전 주식회사 |
| |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, 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 |
| 피고, 항소인 | 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 |
| | 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 |
| 제 1 심 판 결 | 서울행정법원 2023. 5. 19. 선고 2022구합66439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23. 10. 13. |
| 판 결 선 고 | 2023. 11. 10. |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0. 9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,577,66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08

별세 19,519,35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바) 피고는, 적어도 이 사건 사무실 중 접견실과 임원실은 원고 본점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뿐, ○○○○본부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, 이 부분만큼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.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, 을 제4, 17 내지 2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접견실과 임원실이 ○○○○본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본점의 용도로만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다른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### 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08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